2023 주택건설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

2023 주택건설의 날('23.12.14)을 맞이하여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·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 포상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3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

I.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

1. 추진목적

○ 2023 주택건설의 날(12.14)을 맞이하여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·포상하여 주택산업 종사자 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2. 기본방향

- 주택건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·포상
 - * 좋은 일자리 창출, 혁신성장과 공정경제, 국민안전과 행복, 새로운 주택건설 문화 정착·확산, 신기술·공법개발, 주택건설 관련 제도개선, 해외시장 개척, 국위선양, 주택건설 신수요 창출 등
- **국가경제발전** 및 **국민의 삶의 질 향상**,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**국가사회발전 유공자** 발굴·포상

-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
 공적을 거둔 공로자를 우선 선발
- **훈·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** 또는 **괄목할만한 공적**을 세운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며, 단기 공적인 경우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
- 포상 후보자의 공개검증 등 철저한 공적검증과 심사를 통하여
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수상자에게는 자긍심 고취

Ⅱ. 포상개요

1. 포상시기 및 장소

○ **일시** : **2023. 12. 14(목)** 예정(2023년 주택건설의 날 기념행사시 수여 예정)

○ **장소** : 건설회관 2층 대강당(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)

2. 포상종류 및 규모

○ **종류**: 산업훈장(금탑, 은탑, 동탑, 철탑, 석탑), 산업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장과표창 등

○ 규모 :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

3. 포상후보자 추천

추천기간 : 2023 주택건설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고일로부터
 2023. 6. 30(금)까지

○ **추천대상**: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주택건설산업 분야의 사업자, 단체 또는 공로가 있는 개인

Ⅲ. 포상 및 추천기준

1. 포상 및 표창기준

- 중복수여의 금지(상훈법 제4조) 준수
-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(동법시행령 제17조의2) 준수
- 「2023 정부포상 업무지침」, 「장관표창 업무지침」 준수

2. 수공기간

○ 추천일('23.8.31)을 기준으로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
3. 재포상 금지기간 : 수여일*로부터 추천일** 기준

* 수여일 :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

** 추천일 :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

- 가.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- 나.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다.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라.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- 마.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바. 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,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, 관리 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 있는 임원 및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받을 수 없음

4. 추천제한

가.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나. 형사처분

- 1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2)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3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5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6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7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- 8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- 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 - 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- 다. 「상훈법」제8조 및 「정부표창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
 - ※ 단.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 - ※「정부표창규정」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- 라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- 1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2) '임원'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
 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.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3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 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마. 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 - 1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2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3) 다만, 상기 1), 2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바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1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2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 - 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사.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아. 사회적 물의 등 유발
 - 1)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Ⅳ. 공개검증

1.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

- **공개대상** :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
- 공개내용 : 추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, 성명, 주요공적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
 - * 추천대상자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함
- **공개방법** : 국민생각함, 정부24,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, 국토교통부,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,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
- ㅇ 공개기간 : 공적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15일 이상 공개
- 공개결과의 활용
 - 공개검증 과정에서 추천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, 수사진행,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
 - * 정부포상 추천 이후 검찰, 경찰, 감사원 등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(☎ 044-201-3330)에 즉시 통보

♡. 평가기준

구 분		주요 평가지표				비고
공	국가발전 기여도 (10)	국가전반 경쟁력 강화 기여국위선양 기여		6		
통	국민생활 향상도 (10)	○ 국민 주거안정 향상 기여 ○ 주거문화 발전 기여	6			
지 표 표	고객 만족도 (10)	○ 고객만족도 향상 기여 ○ 주택품질 향상 기여			6	
(40)	창조적 기여도 (10)	국가제도, 사회관행, 행정관례 등 변화 기여윤리경영 및 지식경영으로 경영혁신 기여				
특	공적기간 (10)	구 간 - 25년 이상 - 20년 이상~25년 미만 - 15년 이상~20년 미만 - 10년 이상~15년 미만 - 7년 이상~10년 미만 - 5년 이상~ 7년 미만	대표(이사) 10 9 8 7 6 5	임직원 - 10 9 8 7 6	5	
성 지 표 (60)	주택건설 실적 (20)	구 간 - 1만5천세대 이상 - 1만세대 이상~1만5천세대 미만 - 8천세대 이상~1만세대 미만 - 6천세대 이상~8천세대 미만 - 4천세대 이상~6천세대 미만 - 2천세대 이상~6천세대 미만 - 2천세대 이상~2천세대 미만 - 1천세대 이상~2천세대 미만 - 5백세대 이상~1천세대 미만 - 5백세대 미만 - 5백세대 미만 ※ 계열사분 미포함	대표(이사) 20 19 18 17 16 15 14 13 12	임직원 - 20 19 18 17 16 15 14 13	12	

	구 분	주요 평가지표	기본 점수	비고
	주택산업 발전 기여도 (10)	 주택산업 발전 관련 활동실적 주택산업 안전의식 제고 기여 상호협력 및 상생경영 기여 주택산업발전 관련 대외 수상실적 	5	
특성	평판도 (6)	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 및 나눔경영 실천노사관계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사회봉사관련 대외 수상	1	
지 표	인지도 (6)	 대내외 활동 등 업계내 영향력 정도 주택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기여 모범납세 등 사회기여관련 대외 수상 	1	
(60)	창조도 (6)	기술연구개발 및 진흥 활동 등주택산업분야 패러다임 변화정도창의성 발휘로 기업가치 제고	1	
	난이도 (2)	ㅇ 열악한 환경 및 조건에서의 공적달성 실적	1	
100점		합 계	50	

Ⅴ. 행정사항

1. 접수기한

○ 공고일로부터 2023.6.30.(금), 18:00까지 접수분에 한함

2. 접수방법

ㅇ 접수처로 우편,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

3. 접수처

- 한국주택협회 기획본부(Tel. 02-6900-9071)
 (06050)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층
 ※ 이메일: kis1288@housing.or.kr
-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업본부(Tel. 02-785-0915)
 (0733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주택건설회관 4층
 ※ 이메일: khba300@khba.or.kr
-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(Tel. 051-955-5632)
 (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
 ※ 이메일: jchamkdw@khug.or.kr

4. 제출서류

- ○【붙임1】「주거복지유공」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
- 【붙임2】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
- ○【붙임3】이력서(사진부착) 1부
- ○【붙임4】공적조서 1부

5. 제출서류 작성방법

- * 모든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지정된 붙임서식으로 작성
- * 수공기간 산정시 기준일은 추천예정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산정

○ 이력서

- 학력사항은 최종학력과 직전학력 2개 이상 기재
- 경력사항은 최초 업체경력부터 경력 위주로 현 근무지까지 기재 ※ 여권용 사진 부착

○ 공적조서

- '추천훈격', '추천순위', '조사자' 및 '추천관'은 기입 불필요
- '공적기간(수공기간)' 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입 <예> 시작일 ~ '23.8.31까지 기준으로 00년 00월 00일로 기입
- '공적요지'는 반드시 70자이내로 작성, "~ 기여함" 으로 작성
- '주요경력'란은 학력 및 경력을 기입(연월일 정확히 기입)
- '과거포상기록'란은 장관표창 이상만 기입(연월일 정확히 기입)
- '공적내용'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신명조, 12point로 작성
- '공적내용'은 6하 원칙에 의하여 가급적 정량화(수치화)하여 텍스트와 숫자만으로 작성하되 표, 그림, 특수문자, 기호 등이 포함된 관련 증빙 서류는 별도로 첨부 가능
- '공적내용'은 단순 나열 또는 추상적이거나 미사여구 표현은 지양하고 사실(Fact) 위주로 작성
- '공적내용'은 공적심사 등에 활용되는 중요자료로 최소 2page 이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

○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모든 서류와 파일의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함 <예> 성명, 한자, 주민번호, 회사명, 직위, 수공기간(공적기간) 등
- 기재한 공적내용과 관련된 별도의 증빙이 있는 경우 제출 가능
- 제출된 서류는 포상업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화하지 않음

「주거복지 유공」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

	성 명* (단체명)		관 계*	(피추천인의)
추 천 인	연락처*	(휴대전화/전화)		
	전자우편			
	성 명* (단체명)		생년월일	
	주 소*		근무처 (직업)	
피추천인 (포상후보자)	전 화*	(자 택) (사무실)	휴대전화*	
	주요경력 (기간)	· (· (· (현	~) ~) ~) ~)	
공적내용*				

*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

(추천시 유의사항)

- ① 피추천인(포상후보자)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근무처, 전화번호(자택·사무실) 등 **인적사항, 주요경력,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**
-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·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피추천인의 성명,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
- ④ 피추천인의 **공적사항 증빙자료**(사진, 관련서류, 언론보도 등)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추후 공적사실 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
- ⑤ 필수 기재사항(*표시)
 - 추 천 인 : 성명(단체명), 관계(피추천인의), 주소, 전화 또는 휴대전화
 - 피추천인 : 성명(단체명), 주소, 전화 또는 휴대전화, 공적내용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(정부포상 후보자용)

□ 포상 후보자

성 명		
소속(주소)	직 위(급)	

-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- 1.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- ※ 특히, 아래의 '신고의무 사항'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「상훈법」제8조제1호의 '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'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■ 신고의무 사항

-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-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- ※「상훈법」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 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·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지원 여부
- 2.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 20 . . .

 성명
 (서명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**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**될 수 있습니다.

- 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**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**, 포상 후보자 **공개 검증 및 공적심사**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게재,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
- 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「상훈법시행령」제33조에 따라 성명, **주민등록번호**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 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**군번(군인의 경우)**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- 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서훈기록부는 영구,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,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,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

/	□ 게이저ㅂ	계고에	도이하니다	/ □ 개인정보	계고에	도이치지	아스미마	\
`	/H \	제도에	アコゼロゲ	/ /H \	제동에	メンコロアハ	ほせいい	

[붙임3]

., .,			0	<u></u> 력	 서
사 진		한 글	<u>'</u>	<u>'</u>	· 휴대폰
(3.5*4.5 크기 정장 착용한 탈모, 상반신, 무배경	성 명	한 문		연락처	회사
정면사진)	주민등				
자 택	1 60	7 2 4			
주 소 회 사					
회사명				 직 약	의
사업자등록번호				법인등록번	
산재보험관리번호				토건면허번	
년 월 일부터 ~		-지			경력사항
		•			
	•				
	•				
	•				
	•				

공 적 조 서

			(앞 곡)
성 명		(한자)	
7 d F 2 d 5	_	군번(군인인 경우)	
주 민 등 록 번 호		국적(외국인인 경우)	
주 소			
직 업		소 속	
직 위		직 급 · 계 급	
추천 훈격		추천 순위	
공 적 분 야		공 적 기 간	
공적 요지(70자 ㅇ	기내)		
	조사	자	
소 속			
직위(직급·계급)		성 명	(서명 또는 인)
위의 기록이	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		
	년	월 일	
추천관	직위	성명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주요 경력					
연 월 일	이력사항				
	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				
수여일(연 월 일)	내 용				
	공적 내용				
○ 국가발전 기여도					
○ 국민생활 향상도					
○ 고객만족도					
○ 창조적 기여도 ○ 고전기가					
○ ○ 주택건설실적	○ 공적기간 ○ 주태거석실적				
○ 주택산업발전 기여도					
○ 평판도					
○ 인지도					
○ 창조도					
○ 난이도					